

동탄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안내



토지거래허가란?

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허가대상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할 경우,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입니다.

1. 허가구역 지정 현황

- 지정시기: **2026. 7. 5. ~ 2027. 12. 31.**
- 허가지역: 동탄구 전역
- 허가대상: '건축법 시행령' 별표1에 따른 아파트
- 지정효과
 - 기준면적(주거지역 6㎡ 등) 초과 아파트 거래시 구청장 허가 필요
 - 실수요자만 취득 가능하며 허가받은 토지는 목적에 따라 일정기간 반드시 직접 이용



2. 허가 절차

- 신청방법: 거래 당사자(매도·매수인) 공동 신청
- 처리기간: 신청 후 **15일 이내** 허가 또는 불허가 통지
- 절차



제출서류

-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서
- 토지취득자금조달계획서
- 토지이용계획서
-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
-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- 개인신청자용 지적전산자료 이용신청서
- 관련 입증서류 등

※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.

3. 위반 시 불이익 (벌칙)



무허가/부정 허가

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
2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% 이하 벌금



목적 외 사용

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
취득가액의 10% 범위 내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
(이용의무기간 종료 시까지)

토지거래허가제도는 투기적 토지거래를 예방하고,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.